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글감으로 하여 —

함태성**

차 례

- I. 서론
- II. Born Free USA v. Norton 사건과 문제의 제기
- III.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
- IV. 동물 전시의 법적 문제
- V.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 -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
- VI. 글을 맺으며

[국문초록]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현재의 동물원 동물은 자연의 본능과 습성이 제거된 채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수많은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만일 동물의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행위들이 동물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동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가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현대 철학과 윤리학의 견해들이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동물 전시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법적 규율

*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C1011664-01-01)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필요한 영역이 된다. 특히 대형 유인원이나 코끼리 등 쾌고감수능력 또는 지각력이 뛰어난 동물일수록 더 세심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입법적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한 큰 진전이라는 견해까지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으로 동물원 동물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나아가 동물원 관리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일은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알맹이를 채워 넣는 일이다. 향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에게 고통과 피로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쟁점과 동물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거리를 주고 있는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를 동물윤리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본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현재의 동물원 시스템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I. 서론

2017년 7월 25일 호랑이 ‘크레인’은 고단하고 팍팍했던 현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크레인은 황윤 감독¹⁾의 동물원 다큐멘터리 ‘작별’에 나왔던 호랑이로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근친번식으로 태어나서인지 안면에도 기형이 있었다. 서울대공원의 인기 동물이 될 수가 없었던 크레인은 2004년 테마파크 동물원 치악산 드림랜드로 이송되었다.²⁾ 10년 가까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1) 황윤 감독의 작품으로는 ‘작별(2001년)’을 포함하여 동물의 로드킬 문제를 다룬 ‘어느날 그 길에서(2006년)’, 공장식 축산과 농장동물 육식에 관한 문제를 다룬 ‘잡식가족의 딜레마(2015년)’ 등이 있다.

2)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2015년 폐쇄되었고 동물원에 남겨진 동물들의

지내던 크레인 동물단체와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2012년 12월 다시 서울대 공원으로 돌아왔고 다른 동물원 동물들처럼 동물원 우리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³⁾ 크레인은 오늘날 동물원의 불편한 관행과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관람객의 유치가 동물원의 운영과 존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오늘날의 동물원들은 그 동안 인기 있고 희귀한 동물들을 수입하거나 번식시켜서 그들을 전시하는데 치중한 반면 좁고 열악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 근저에는 종(種)차별과 종간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동물원에는 인간이 가장 우월한 종이고 다른 종을 마음대로 다룰 권능이 있다는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을 전시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인간이 전시 목적으로 동물을 한 곳에 모아 두고 사육하는 것은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눈앞에 보이는 동물들이 동물원까지 오게 된 이유와 이곳에 전시되기까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 그 동물들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어떤 동물은 어미가 밀렵꾼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동료들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이름하에 도태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건너 힘겹게 수송되어 왔을 것이다. 또는 호랑이 크레인처럼 동물원에서 태어나 열악한 동물원을 떠돌다가 결국 동물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동물원 동물은 자연의 본능과 습성이 제거된 채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수많은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만일 동물의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행위들이 동물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동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가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현대 철학과 윤리학의 견해들이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동물 전시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규범인 법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전시의 행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그 동안 헌법, 민법, 형법 등 전통법학은 동물 전시가 동물에

관리와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3) 한겨레 신문, “호랑이 ‘크레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2017.7.29. 기사.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한 큰 진전이라는 견해까지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으로 동물원 동물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나아가 동물원 관리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 이제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알맹이를 채워 넣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법학 글쓰기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윤리적 논의를 장황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거나 법학적 논의만이 유용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윤리학적 논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제적 연구 또는 융합 연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는 동물에 대한 법학적 논의의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쟁점과 동물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거리를 주고 있는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살펴본다(II). 다음으로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를 동물윤리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본다(III). 그리고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현재의 동물원 시스템의 문제들을 살펴본다(IV).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뒤(V),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VI).

II. Born Free USA v. Norton 사건과 문제의 제기

1. 사건의 배경 및 전개 과정

4)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에 근거하고, 기업 또는 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내 보호구역에 있던 야생코끼리 11마리의 운명을 갈랐던 미국의 *Born Free USA v. Norton* 사건⁵⁾은 여러 가지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⁶⁾

11마리의 코끼리(일명 ‘스와질란드 일레븐’⁷⁾)가 미국 법정까지 가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⁸⁾ 스와질란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접해 있는 작은 나라로 1950년대 만해도 스와질란드에는 불법적인 밀렵 등으로 인해 코끼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이때 테드 레일리(Ted Reilly)라는 사람이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벌이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스와질란드 국왕을 설득하여 스와질란드 최초의 국립공원인 홀레인 국립공원(Hlane Royal Nation Park)을 만들고, 검은코뿔소와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카야 야생동물 보호구역(Mkhaya Reserve)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과 상아교역이 금지되면서 아프리카 남부지역의 코끼리 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나미비아, 잠바브웨 등지에서 코끼리 수를 줄이기 위한 도태작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도 코끼리 개체수가 증가하여 그 수를 제한하고자 도태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살아남은 수 백 마리의 새끼 코끼리는 스와질란드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남부 주변국의 공원으로 흩어졌다. 스와질란드의 음카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도 1987년부터 남아공에서 두세 살 내외의 어린 코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후 코끼리들이 음카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 어린 코끼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카야 보호구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수많은 나무껍질을 벗겼고 많은 나무들을 쓰러뜨려 공원 전역이 황폐화되어 갔다. 결과적으로 독수리나 올빼미 등의 다른 동물 종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었고, 더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검은코뿔소와도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테드 레일리와 그의 아들 믹 레일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국토

5) *Born Free USA v. Norton*, 278 F.Supp.2d 5 (D.D.C. 2003).

6) Joan Schaffner, *An Introduction to Animals and the Law*, Palgrave Macmillan, 2011, p.97.

7) 소송 당시 동물운동단체에서는 이 코끼리들을 ‘스와질란드 일레븐’이라고 불렀다.

8) 사건의 배경 및 전개과정은 각주 5)의 판결문 p.1 이하의 내용과 토머스 프렌치, 이진선·박경선 역, 『동물원』, 에이도스(2014) 앞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작은 스와질랜드의 국립공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태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웃 나라인 남아공에 코끼리를 보낼 만한 곳을 알아보았으나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이때 미국의 샌디에이고 동물원과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로우리파크 동물원 측에서 코끼리를 데려가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이들 동물원들은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코끼리를 수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스와질랜드 국왕의 승인이 떨어지자 레일리 부자는 기존 코끼리 무리에서 미국으로 보낼 코끼리 11마리를 선별하여 미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였다.

미국 동물원측은 이들 코끼리들이 미국 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들여오는 것이 거의 15년 만의 일로,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은 노쇠하여 새끼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생코끼리를 데려가면 번식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 동물원측은 이들 코끼리에 대하여 대략 133,000달러(한 마리당 약 1만 2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스와질랜드 측에서는 이 돈으로 보호구역 내의 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방지 활동을 펼치며 동물들의 서식지를 위한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미국 동물원측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과 멸종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 ESA)에 따라 동물수입허가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합중국 어류 및 야생관리국(FWS)’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2002년 9월 수입 허가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스와질랜드에서도 수출 허가가 발급되었다.

동물원들이 이 코끼리들의 운송을 준비하고 있던 2003년, Born Free와 PETA 등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연합하여 시위를 벌이면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0일, Born Free USA는 CITES, ESA 및 국가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에 따라 FWS의 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입을 금지하는 가처분(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 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11마리의 코끼리가 미국의 동물원으로 수입될 때 발생할 11마리의 코끼리 및 스와질랜드 코끼리 무리에 가해질 피해를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법원이 이들

코끼리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다면 이들의 이익이 회복 불능으로 손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는 코끼리를 동물원의 우리에 갇혀 죄수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게 놔두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PETA에서는 코끼리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공원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제기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여러 요건, 즉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 이익의 형량(balancing), 공익(public interest) 등을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원고들이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동물원측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Standing)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적격에 관한 의심은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⁹⁾ 그리고 원고들이 스와질란드 코끼리들에게 발생할 잠재적인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 대한 전반적인 해악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코끼리 수입의 승인에 관한 연방 규정은 NEPA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중요한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¹⁰⁾

법원은 코끼리들의 죽음과 동물원에서의 이송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코끼리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 코끼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았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결국 미국으로 이송 준비 중인 11마리의 코끼리는 스와질란드에서 살처분되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코끼리들이 도태되는 경우 동물원측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였다.¹¹⁾

9) 각주 5)의 판결문 pp.3-4.

10) 각주 5)의 판결문 p.8 이하

그리고 법원은 FWS는 사심없는 정부 기구이며 이 코끼리들에 대하여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공공의 이익도 이 사안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¹²⁾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각 피해에 대한 비교형량이 금지명령을 허용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거절하였다.¹³⁾

3.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생각거리

(1)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코끼리의 이익을 주요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익과 피해들이 주장되어 이것들의 비교형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끼리의 수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동물보호 시민단체, 코끼리의 수입을 통하여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물원 측, 코끼리의 살처분 대신 미국 동물원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아프리카 동물보호구역 운영자, 야생동물 수입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 이를 바라보는 공공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이익과 피해의 존재 여부, 비교형량의 요소와 기준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입장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관람할 수 있음으로 해서 코끼리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전시는 공공의 이익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이고 따라서 코끼리들은 동물원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도태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코끼리의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끼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코끼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11) 각주 5)의 판결문 pp.14-15.

12) 각주 5)의 판결문 p.16

13) 각주 5)의 판결문 p.16

결정이 코끼리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것인지 고려하였고, 비록 동물원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더라도 코끼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코끼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법원이 코끼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원측이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만일 코끼리들이 미국으로 이송되지 않고 살처분 되면 동물원측은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었다. 한편, 코끼리는 높은 지능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동물로서, 코끼리들이 원래 있던 자연과는 전혀 다른 동물원에서 평생 우리 안에서 갇혀 살게 된다면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예전부터 채택되어 오던 방식대로 살처분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코끼리들이 살처분 되는 것 보다 동물원으로의 이송이 더 낫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동물원이 동물 본래의 본능과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만한 환경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동물원이 비록 연출된 서식지일지라도 자연에 최대한 가까운 시설과 공간을 갖추어 동물들이 야생에서처럼 본래의 본능과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코끼리의 이익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은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미국 동물원측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멸종위기종법(ESA)에 따라 동물수입허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된 목적은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의 운영, 홍보전에 이바지 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법령에서 이와 같은 목적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동물원이 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의 운영, 홍보전의 이바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동물원측은 번식프로그램의 운영이 더 많은 개체수를 확보하여 홍보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동물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시함으로써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관람객의 유치는 동물원의 존립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동물원들이 코끼리, 판다, 코알라, 북극곰 등 희소하고 인기있는 동물들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¹⁴⁾

동물원들은 여가와 오락의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과 함께 연구 및 종보존 기능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는 반론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동물 전시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

이 글에서는 기존 윤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전개되었던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물 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된 동물윤리학의 대표적인 두 이론,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¹⁵⁾ 이들 입장에서는 동물 전

14) 동물원들은 이 동물들을 소위 ‘주력동물’로 내세우고 특별한 관리를 하면서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사육시설을 배치하고 전시를 한다.

15) 다음 글들은 동물해방론과 동물권을 포함한 동물윤리학의 흐름과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상배, “동물보호론을 둘러싼 쟁점들”, 철학과 현실 통권75호(2007년 겨울), 철학문화연구소, 98-109면; 김성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철학연구 제22집(1999.6), 고려대 철학연구소, 101-128면; 김일방,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비판”, 철학연구 제84집(2002.11), 대한철학회, 217-240면; 김진석,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가 아니면 적인가?”, 문학과 환경 제5권 1호(2006.6), 문학과 환경학회, 115-144면; 정대영,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동물해방론 비판”, 인문과학논총 31권 2호(2012),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140-171면; 박이문, “동물권과 동물해방”, 철학과현실 통권 제46호(2000), 철학문화연구소, 199-207면; 박창길,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환경철학 제4집(2005), 한국환경철학회, 29-72면; 유선봉, “動物權 論爭 : 哲學的, 法學的 論議를 中心으로”,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2008.8), 중앙법학회, 435-468면; 이우봉, “인간의 법을 통해 바라본 동물의 죽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통권 제150호 (2009.3), 서울대 법학연구소, 191-224면; 최문훈,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진화론적 이유”, 철학연구 88권, 철학연구회, 283-306면; 허남걸,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제43집(2005.8), 173-199면;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 책, 2015 등. 이들 논문은 동물윤리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김성한, 김일방, 최훈의 글은 피터싱어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헌이다. 그리고 유선봉, 이우봉의 글은 법학자의 논문으로 밀도있는 논의로 동물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에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된 동물윤리학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철학자 최훈 교수는

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론은 동물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동물운동진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국가에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¹⁶⁾

동물해방론은 철학자이자 동물윤리학자인 피터싱어(Peter Singer)의 주장을 기초로 한다. 싱어는 벤담의 공리주의 계보를 잇는 학자로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동물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는 1975년 출간된 그의 저서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에서 단지 인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아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일종의 종차별주의(Speciesism)적 태도라고 보았다. 종차별주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그는 도덕원리로서의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던 간에(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대상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종차별, 성차별이 옳지 않은 것처럼 종차별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평등의 원리를 다른 종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일한 차원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동등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으로 표현된다. 이익의 동등한 고려라는 것은 동물을 인간과 평등하게 또는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의 본성에 따라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일한 차원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물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면서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는 것에 상응하여

2017년 6월 한국환경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에서 ‘생명가치, 동물보호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 글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2017)에 게재되었다.

16) 동물윤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론이라는 대응되는 용어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운동 또는 동물정책 분야에서는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론 또는 동물복지론, 동물권론, 신동물복지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동물복지론’은 피터싱어의 주장과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복지론은 오늘날 동물보호운동 또는 동물정책 분야에서 주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주요 선진국들의 동물정책과 입법의 목표와 지침이 되고 있다. 보다 진보적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권론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물전시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윤리학자들의 글에 주로 선택되고 있는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¹⁷⁾

동물들도 고통을 피하고 공포와 불안을 받지 아니하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지내며 자연적인 보급자리에서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이러한 것을 향유할 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익은 인간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똑같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해방론에서는 인간이 동물에게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관행들을 유지하고 방임하는 것은 종차별적 태도로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예컨대, 동물원 동물 전시를 포함하여 동물실험, 사냥, 서커스, 모피 산업 등 동물에게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다.¹⁸⁾

동물해방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동물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익들의 형량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동물실험 등의 동물이용이 인간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는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예외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본다. 동물원의 동물 전시도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동물 전시도 인간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는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동물해방론의 입장에서는 여가와 오락 제공을 위한 동물 전시로 인간이 누리는 이익이 과연 인간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는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인가를 물을 것이다. 동물원의 여가와 오락 제공 기능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인간이 받는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동물원에서 여가와 오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피해가 전부이다. 이 부분은 현재 다양하고 특화되어 있는 수많은 형태의 다른 테마파크 이용을 통하여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반면, 여가와 오락 제공을 위하여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심각하다. 동물 전시는 동물을 일정 공간에 가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동물의 자연적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동물원 전시를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수송하고 사육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피해는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이익과 피해들을 비교했을 때 동물에게 미치는 피해와 해악이 훨씬 크다. 따라서 동물해방론

17) 피터싱어, 김성환 역,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35-39면.

18)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 책, 2015, 56면.

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주면서 이루어지는 여가와 오락을 위한 동물 전시는 비윤리적이다.

만일 동물원이 여가와 오락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되는지 문제된다. 동물을 전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익과 효용이 동물 전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과 괴로움보다 훨씬 크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동물원에 입장하면 특정 인기 동물들 앞에서 주로 머무르려고 하는 반면 그 외의 동물들은 스치듯 지나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야생의 본능을 지닌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우리에 갇혀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복적인 정행행동을 하는 동물을 자주 만나게 된다. 또한 오늘날은 비디오 영상 자료 등 우수한 교육 콘텐츠들이 보급되어 있어 굳이 동물원을 찾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한 공부와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나아가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동물원도 머지않은 시간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¹⁹⁾

한편, 동물원의 역할 중의 하나로 동물연구나 멸종위기종의 종보전 기능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연구를 위하여 또는 종보전을 위하여 동물을 굳이 전시할 이유는 없다. 특히 인간이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종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에서 그 동물들을 다시 잡아들이고 이를 전시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물의 전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는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동물의 전시는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톰 리건(Tom Regan)²⁰⁾은 기존 공리주의적 접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에서 동물권을 주장하였다. 리건은 도덕적 권리의 개념을 동물에게까지 확장을 하였다. 동물도 인간처럼 본래적인 도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¹⁹⁾ 연합뉴스, “동물없는 동물원 가능할까?...스페인 가상현실 대안론”, 2017.3.31. 기사

²⁰⁾ 동물권론을 기초한 학자로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3, 1985, 2004); *Empty Cages: Facing the Challenge of Animal Rights*, published by Rowman and Littlefield, Lanham, Maryland(2004) 등이 있다. *Empty Cages*의 책표지를 보면 동물들이 쇠사슬을 끊고 참혹한 철창 우리를 탈출하여 저 멀리 파란하늘이 보이는 자유의 세계로 출저어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본래적 가치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본래적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의하여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말한다. 동물 역시 인간처럼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삶(=생명)은 동물에게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본래적 가치이다. 생명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그가 합리적 존재인지, 지능이 높은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갓난아이인지, 지적 장애인인지 상관없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듯이, 생명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도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²¹⁾

동물권론은 삶의 주체인 개체는 단지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되고 그 개체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권론에 의하면, 동물은 삶(=생명)의 주체로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동물이용이라 하더라도 동물의 본래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물이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동물 전시의 문제를 바라 보면, 동물원이 오락을 위한 동물 전시 형태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동물원 동물은 삶의 주체이고 생명의 주체이다. 따라서 동물원 동물도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기존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일정 공간에 가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동물의 자연적 본능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동물원 전시를 위해 포획되고 수송되고 사육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강제는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동물원이 여가나 오락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전시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동물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은 동일하게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동물해방론이든 동물권론이든 모두 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 행위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현재 동물원에서의 동물 전시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의 동물원 시스템을 포함하여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1) 최훈, 각주 18)의 책, 43면.

IV. 동물 전시의 법적 문제

(1)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 전시는 보다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이 된다.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동물’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이용·관리를 주된 규율 내용으로 하며, ‘동물복지’ 이념을 기초로 하여 동물 관련 법이론과 판례, 입법 및 정책 등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²²⁾ 동물법이 기존 전통법학과 구별되는 징표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동물복지 이념은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된다. 동물복지는 동물이 자연적 본능과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갈증과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히 결핍되지 않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학대금지 등 인도적인 배려와 취급을 하는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 동물을 법적·제도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근거는 동물복지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도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동물복지의 증진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²³⁾

또한 동물법은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도를 정하고 대상 동물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 동물의 법적 개념에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쾌고감수능력’ 또는 ‘지각력’(limit of sentience)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각력이 있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보호 이익의 향유 주체가 된다. 그리고 쾌고감수능력 또는 지각력이 뛰어난 동물일수

22)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2017.6), 510면.

23) 함태성, 각주 22)의 논문, 512면.

록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입법적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대형 유인원과 코끼리나 돌고래와 같은 지능이 높은 고등동물은 법적 고려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²⁴⁾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일정 공간에 가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동물의 자연적 본능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우리 현실 속 대부분의 동물원은 시멘트 바닥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열악하고 비좁은 시설에 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실현을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물법의 입장에서는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형태의 동물 전시는 타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개선되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점이고,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에 우리나라 동물 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동물법 분야의 중요한 개별 입법의 하나로 입법과정에서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성안된 법률은 그렇지 못하였다. 동법은 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동물원의 안전관리, 자료제출, 지도점검 등 동물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미흡한 상태여서 동물복지가 빠져있는 부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동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즉, 동물의 보전·연구, 정보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주요 목적이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동법이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시·사육시설이나 사육환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²⁴⁾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대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2015.6), 410면 이하.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원

구분	등록요건
가. 시설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 것 1)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전시시설 3) 사육시설 4)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나.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어 것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양서류·파충류
2.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가.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동물원에는 매우 다양한 종의 많은 동물들이 사육되고 전시되고 있다. 적절한 환경의 제공, 건강관리, 행동관리,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 기준과 다양한 각 종별 구체적인 사육 및 시설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령은 위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원에는 코끼리, 호랑이, 사자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사육·전시되고 있지만 이들 각각에 대한 사육면적이나 사육환경 등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동물 전시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법 목적에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세부적인 동물사육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개별 법령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의 설정’은 매우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다. 동법에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강화된 내용의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고 신규 동물원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법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측에 돌아가는 불이익보다는 동물원 동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한다.²⁵⁾ 이는 동물윤리학이나 동물법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므로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동법에 동물복지를 위한 세부기준설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육 및 전시 시설의 최소 구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등록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준 미달의 동물원 난립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규칙에 물과 음식 제공, 적절한 환경 제공, 동물 건강 관리, 행동관리, 교육, 보존, 행정,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안전관리와 같은 '일반적 기준'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의 사육면적과 사육환경 등 각 '종별 개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⁶⁾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대형 유인원과 코끼리나 돌고래와 같이 쾌고감수능력이 높은 동물들에 대하여는 더 세밀하고 동물복지 배려적인 사육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은 입법형식적 측면에서도 최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동법이 공법(행정법)으로서 집행법이고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다른 '관리'법에서 일반적으로 두고 있는 규정들 - 기본원칙, 국가나 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정계획규정, 결격사유, 영업자의 지위 승계, 위원회 관련 규정 등 -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조문 18개의 허약한 '관리'법이 된 것이다. 또한 동법은 법정계획규정이 없는데서 알 수 있듯이(그러다보니 법률 규정상으로는 정부의 주무부처를 알 수 없다) 행정주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동물원을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며 미래형성적 정책수단들을 체계적으로

25) 이익과 피해의 비교형량 대상이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공을 하지 못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원수족관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동물은 이들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교형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6) 영국의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 1981)의 경우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장관이 동물원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현대동물원 운영기준(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 의하여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 운영기준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동물원 전문가 위원회 핸드북(Zoos Expert Committee Handbook)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유선봉, "동물원 동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언-영국의 동물면허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2014.8, 22면 참조).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오늘날 국가의 다양한 행위 형식 중 ‘행정계획’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계획없는 국가정책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장애요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향후 동법에는 환경부로 하여금 ‘동물원동물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동물원동물복지 기본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일반법적 지위에 있지만²⁷⁾, 목적규정(제1조)이나 정의규정(제2조), 동물복지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²⁸⁾,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모든 사람에 대한 동물학대 금지규정(제8조) 등으로 볼 때 기본법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모든 동물에 대한 복지가 고려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 동물원동물에 대한 사항은 없다. 실무적으로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원수족관법」은 환경부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어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의 복지 문제와 동물원동물의 복지 문제가 별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존 동물원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동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에는 반려동물²⁹⁾과 농장동물(축산동물)³⁰⁾들도 전시

27) 동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동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9)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할 때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30) 「축산법」상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되고 있는 것처럼 동물복지 문제를 단편적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의 동물복지 이념과 기본원칙 아래 위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원수족관법」상의 「동물원동물복지 기본계획」의 연계성 및 상호보완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³¹⁾ 동물복지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아직 크지 않고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계획 수립시부터 동물복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입각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처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상호 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생생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마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있다. 동 기본계획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유통관리 강화, 인공증식 관리 강화, 사육시설과 관리기준 강화 및 적정 관리 방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³²⁾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유통관리 및 인공증식 관리 강화는 멸종위기종의 밀수입이나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고 불법거래된 동물들이 동물원으로 유입되거나 동물원에서 증식된 동물이 외부로 불법거래되는 것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 동물원 관리 행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육시설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야생생물법」 제16조의2 제4항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정된 수의 동물에 대한 사육기준이지만 「동물원수족관법」에 시설기준 등을 정할 때 상호 비교·검토 및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 기본계획에서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 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인력을 육성하고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31) 이러한 필요성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23~제28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험동물의 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부서로서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도 있으나 제도적으로 상호 조정 및 연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실험동물법」 제4조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32) 환경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109면 이하.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바³³⁾, 이들 공공기관은 연구 및 보존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고 하지만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전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분야의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수중동물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이들 기관과 일반 동물원들을 동일하게 다루지 아니면 달리 다루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동물 전시를 위한 동물의 수입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에서 미국 동물원측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멸종위기종법(ESA)에 따라 동물수입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수입의 주된 목적은 전시 및 번식프로그램의 운영, 홍보전에 이바지 등이었다. 그런데 법령에서 이와 같은 목적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유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2017년 2월 9일 울산 남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2마리를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하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들여 놓았다. 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 수입의 목적을 교육 및 생태체험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동물 전시와 동물공연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수입된 큰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4일 만에 갑자기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돌고래들은 해상과 육로 등 약 1000km를 32시간 동안 이동해 고래생태체험관에 도착하였는데, 동물보호 단체들은 장시간의 무리한 이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비좁은 수조 등 열악한 생육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했다.³⁴⁾

우리나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는 경우 CITES와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수입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3) 위 기본계획 92면 이하.

34) 한겨레,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일본산 수입 큰돌고래 4일만에 폐사”, 2017.2.14. 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동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시행령 [별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수입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 에 포함된 생물
-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 에 포함된 생물
-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확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 에 포함된 생물
-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 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 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법령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수입 허가를 신청하면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등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허술한 수입허가기준이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방임하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울산

남구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를 별다른 법적 장애물 없이 수입하여 고래생태체험관에 들여 놓을 수 있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기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으나 적어도 동물공연을 위한 수입은 금지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생태교육 또는 생태체험 목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물공연이 예정되어 있거나 동물공연을 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동물윤리학의 입장에서 당연한 결론이고, 동물법의 입장에서 동물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돌고래는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로서 쾌고감수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다. 따라서 돌고래의 수입 과정과 수입 후의 상황과 여건이 돌고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고래생태체험관의 시설은 서구 다른 나라의 시설기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하루 평균 100km 이상을 이동하는 돌고래를 제한된 공간의 수족관에서 사육하는 것은 자연적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돌고래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야생생물법」 제16조에 모든 멸종위기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전시 및 공연 목적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돌고래 공연과 돌고래 수족관의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세계적으로 고래류의 사육시설기준을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래전시 수족관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³⁶⁾

(3) 동물 전시를 위해 많은 동물을 보유하던 동물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그곳에 있던 동물들의 관리 및 처리가 문제된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호랑이 크레인은 10년 가까이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

35)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2009년 10월 개관 이후 6년간 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돌고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었다.

36) 영국은 1993년 해양 포유류 전시와 공연을 없앴고 유럽연합 10여 개국에도 돌고래 수족관이 문을 닫았다. 중남미의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고래류의 수조 사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2005년 발효됐다. 미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점차 고래류 수족관이 없어지거나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Black Fish)’로 이미 사회적 이슈에 올랐던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 씨월드도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사뮤쇼(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뉴스1, “하루 160km 수영하는 고래에게 84㎡ 수족관이 충분할까”, 2017.2.3. 기사).

에서 지냈다. 이 시설 동물원은 2015년 10월 폐업을 하기 까지 잦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동물원 내의 많은 동물들이 방치되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동물복지에 반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위 동물원이 폐쇄되면서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동물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남겨진 동물 중에는 민간에 양도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반달곰, 일본원숭이, 불곰, 공작, 수리부엉이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수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중 수리부엉이가 꿩, 원앙 등의 일반 조류와 함께 신고도 없이 부산 기장군의 한 음식점에 관상용으로 팔려나가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이 문제된 바 있었다.³⁷⁾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휴·폐원시 보유 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항 제8호에서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다.³⁸⁾ 한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③). 그리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폐원 신고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① 제2호).

새로 제정된 동법의 규정만 보면 동물원 등의 휴·폐원시 보유 동물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등이 미비되어 있어 동물원 등이 휴·폐원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관리 및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37) 연합뉴스, “구멍 뚫린 멸종위기종 관리…감독기관이 불법거래 방치”, 2016.5.18. 기사

38) 해당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8조 ① 제1호).

따라서 동법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폐원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과 지침, 폐원시 해당 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영국의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 1981)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은 면허조건의 집행, 동물원 폐원지시, 면허없는 동물원의 폐원지시, 동물원 폐원에 따른 동물복지의 적용, 동물처분에 대한 지방당국의 권한, 관계공무원 등의 동물원 구내출입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³⁹⁾

한편, 동물원의 휴·폐원시 보유 동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원수족관법」 제12조(조치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보유동물의 양도명령이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사법상으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유 동물은 동물원의 사유 재산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유동물에 대한 양도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동물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건’으로 이와 같은 특수성은 법적 규율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사법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경우 공법상 규율을 통한 사법상 원리의 제한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물원의 휴·폐원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동물들의 복지와 생존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명확한 법적 규율을 위해 동법 제12조의 조치명령에 동물의 복지와 생존에 치명적 위해를 주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동물원에 동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휴·폐원시 적절한 동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⁴⁰⁾

한편, 휴·폐원시 보유 동물 관리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의무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규율하자는 견해가 있다.⁴¹⁾ 즉,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들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동물원의 규모나 보유동물의 개체수 등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납부하고(또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폐원시

39) 유선봉, 각주 26)의 논문, 22면.

40) 이소영,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환경법과 정책 제17권(2016.9.30.),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70-71면.

41) 이소영, 각주 40)의 논문, 78면 이하.

보유하던 동물을 적절히 관리 및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동법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오늘날 이동동물원, 체험동물원, 동물카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물 전시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동물 전시는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사람들(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재 위 시행령 규정 제2호의 공동부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호의 시설만이 동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이 된다. 현재 전국에서 특별한 관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이동동물원, 체험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곳에서는 밀수된 멸종위기종 동물이나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전시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동물과 접촉하는 유치원생이

나 초등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해 기생충 감염이나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동물로 인해 상처를 입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의 동물원들도 법적 관리체계 내로 들어와야 한다. 「동물원수족관법」에 이들 동물원들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V.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 -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

오늘날 동물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세계 동물원들의 연합체인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오늘날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동물원 비판론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발간한 보고서⁴²⁾에서는 환경적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보전에 이바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³⁾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자하는 시도를 엿볼 수 있는데,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유지하고 윤리적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근본적으로 동물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점과 동물 전시로 인해 동물이 겪는 고통에 비하여 인간에게 주는 혜택과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교육적 목적이든, 연구 및 종보존 등의 목적이든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형태의 동물 전시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살펴보고, 또한 동물법적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임을 살펴보고있다.⁴⁵⁾ 특히 코끼

42) Building a Future for Wildlife -The World Zoo and Aquarium Conservation Strategy,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2005.

43) 위 보고서, p.4 이하.

44) 그리고 WAZA 멤버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위 보고서, p.60).

45) 데일 제이미슨, “동물원을 반대한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합당한 이유들』(피터잉어, 노승영 역), 시대의 창, 2012, 201면 이하; 김성한, “동물원 옹호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재고”, 철학탐구 제29권, 2011 등에서는 기존 동물원을 옹호하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 논거들을 언급하

리, 사자, 호랑이 등 대형 동물들과 고래,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동물들은 동물원에 갇혀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스와질랜드 일레븐 사례에서 코끼리들이 살처분 되는 것 보다 동물원으로서의 이송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이송되어 간 동물원이 동물 본래의 본능과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만한 동물복지적 환경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연에 최대한 가까운 시설과 공간을 갖추어 동물들이 야생에서처럼 본래의 본능과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코끼리의 이익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만일 이러한 동물복지적 환경을 갖춘 동물원이 생긴다면 이곳에서는 관람객을 위하여 일부러 동물을 전시할 필요가 없으며,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망원경은 필수적인 소지품이 될 것이고, 설혹 동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물원 내 마련된 가상현실(VR)기술 또는 기타 우수한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물원 논쟁의 흐름으로 보건대, 머지않은 시기에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대형 유인원과 코끼리나 돌고래와 같이 쾌고감수능력이 높은 동물들을 시작으로 하여,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해본다.

한편,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에 대해서는 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역할과 자연적 서식지를 잃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물의 피난처 역할이 기대되어 진다. 최근 인공 번식기술과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기존 동물원들은 자신들이 야생 동물의 종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대부분 개체수가 충분한 종들의 인공번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보존이 필요한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의 성공한 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과학의 힘을 빌려 멸종위기종의 줄기세포 등을 보관하면서 몇 십 년 후에는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보전 활동들은 동물원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원의 종보전 활동이 지지받기 위해서는

인공번식된 동물들을 다시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스스로 동물의 야생성을 회복시켜 본래의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으로의 복귀 활동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인간들이 차지하는 땅이 점차 확대되면서 야생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센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산림훼손은 동물의 서식지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 결과 비옥한 땅과 깨끗한 물을 두고 인간과 동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동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조차 서로 경쟁하는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사파리 관광을 가장한 또는 사파리 관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트로피 사냥(Trophy hunting)은 동물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⁴⁶⁾ 또한 아프리카 내전, IS와의 전쟁, 시리아 내전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인간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람들이 피난가고 없는 동물원 안에서 굶어 죽는 등 동물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자연적 서식지를 잃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물난민(Animal refugee)을 위하여 적절한 피난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난민이란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산림훼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자연적 서식지를 잃거나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물을 말한다. 동물원이 동물난민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문제는 오늘날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전시는 현재의 동물원 논쟁의 가운데로 불러 올 만한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 돌고래가 수용되어 있는 수족관의 열악한 환경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돌고래 공연에 대하여는 동물학대논쟁

46) 트로피 사냥은 생계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의 일환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트로피 헌터’들은 보통 사냥한 동물의 머리나 몸 전체를 박제하거나 깎이나 이빨, 가죽 등을 가공하여 프로피처럼 전시를 한다. 박제된 동물의 사체는 사냥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냥 전리품 내지 기념품인 것이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의 사냥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 주변에서 여전히 트로피 사냥이 성행하고 있다(경향신문, “잔혹한 ‘트로피 사냥’에 아들이자...짐바브웨 ‘국민사자’ 대 이은 비극”, 2017.07.21. 기사).

이 벌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도 향후 동물 공연과 동물 전시가 아닌 본래의 서식지로 돌려 보내는 역할과 피난처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생태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정할 일이지만 울산 앞바다 적절한 장소에 돌고래들이 설 수 있는 피난처를 조성하고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을 그 곳에 풀어 놓는 것이다. 그 곳을 중심으로 소위 ‘생태적 whale watching’ 등과 같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고래생태체험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 다이지 돌고래와 같은 동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역할도 한다면 진정한 돌고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가 도덕적 의무를 넘어 법적 의무로까지 전파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동물원들도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내고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I. 글을 맺으며

오늘날 동물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물원이 인간사회에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시설의 하나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휴식의 공간과 자연에 대한 교육 기능을 제공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원이 인간의 오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을 전시하고 있고, 전시할 동물을 조달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며 동물들을 좁은 우리 안에서 가두고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행동학이나 동물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발전에 힘입어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들의 본능과 습성을 유지한 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외부의 자극과 위협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 고통과 괴로움 등을 느끼며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물원에 가면 종종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ur)⁴⁷⁾을 하는 동물을 볼 수 있다. 동물원 동물의 정형행동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정신병적 증상이다. 인간 사회에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은 그대로 동물원에 사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예민하고 섬세한 동물일수록 더 아프고 더 불행해질 수 있다”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의 자연적 본능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것이 고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따라서 동물해방론이든 동물권론이든 동물 전시는 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로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동물복지의 실현을 실천적 이념으로 삼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동물법의 입장에서든 동물 전시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동물원 논쟁의 흐름으로 보건대, 머지않은 시기에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해본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여 본래의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활동과 돌아갈 서식지가 파괴되어 피난처를 마련해주는 활동도 동물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 2017. 10. 31. 심사일 : 2017. 11. 23. 게재확정일 : 2017. 11. 24.

47) 예컨대, 좁은 우리에 갇혀서 한 자리를 맴돌거나 같은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잠만 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등 야생동물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행동을 말한다.

참고문헌

-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 책, 2015.
- 토머스 프렌치, 이진선 · 박경선 역, 『동물원』, 에이도스, 2014.
- 피터싱어, 김성한 역,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 연암서가, 2012.
- Joan Schaffner, *An Introduction to Animals and the Law*, Palgrave Macmillan, 2011.
- Born Free USA v. Norton, 278 F.Supp.2d 5 (D.D.C. 2003)
- Building a Future for Wildlife -The World Zoo and Aquarium Conservation Strategy,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2005.
- 김상배, “동물보호론을 둘러싼 쟁점들”, 철학과 현실 통권75호, 철학문화연구소, 2007.
- 김성한, “동물원 옹호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재고”, 철학탐구 제29권, 2011.
- 김성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철학연구 제22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1999.6.
- 김일방,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비판”, 철학연구 제84집(2002.11), 대한철학회
- 김진석,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가 아니면 적인가?”, 문학과 환경 제5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06.6.
- 데일 제이미슨, “동물원을 반대한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합당한 이유들』 (피터싱어 편, 노승영 역), 시대의 창, 2012.
- 메리언 스탬프 도킨스, “동물의 고통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피터싱어 편, 노승영 역), 시대의 창, 2012.
- 정대영,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동물해방론 비판”, 인문과학논총 31권 2호,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 박이문, “동물권과 동물해방”, 철학과현실 통권 제46호, 철학문화연구소, 2000.
- 박창길,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환경철학 제4집, 한국환경철학회, 2005.
- 유선봉, “動物權 論爭 : 哲學的, 法學的 論議를 中心으로”,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8.8.

유선봉, “동물원 동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언: 영국의 동물면허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2014.

이소영,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강원
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6.9.30.

이유봉, “인간의 법을 통해 바라본 동물의 죽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통권 제150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9.3.

최훈,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2017.8.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대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6.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017.6.

허남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제43집, 2005.8.

경향신문, “잔혹한 ‘트로피 사냥’에 아슬마저…짐바브웨 ‘국민사자’ 대 이은 비극”,
2017.07.21. 기사

뉴스1, “하루 160km 유영하는 고래에게 84㎡ 수족관이 충분할까”, 2017.2.3. 기사

연합뉴스, “동물없는 동물원 가능할까?...스페인 가상현실 대안론”, 2017.3.31. 기사

한겨레 신문, “호랑이 ‘크레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2017.7.29. 기사.

한겨레,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일본산 수입 큰돌고래 4일만에 폐사”, 2017.2.14. 기사

[Abstract]

**A Study on Ethical and Legal Issues of Animal Exhibition
and Modern Challenges of Zoo**

Hahm, Tae-se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review a study on ethical · legal issues of animal exhibition and modern challenges of Zoo. In this paper, I review main arguments of Animal Liberation and Animal Right, and then I try to analyze Born Free USA v. Norton case, to suggest modern challenges of Zoo.

Case synopsis and facts of Born Free USA v. Norton are as follows. Plaintiff advocates for the welfare of elephants sued defendant federal officials, alleging that the officials improperly issued a permit for zoos to import endangered African elephants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The advocates mov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importation. The zoos sought to import the wild elephants from a foreign country which determined that its herd needed to be reduced and that the elephants would be killed if they were not exported. The advocates contended that the officials improperly found under CITES that the importation of the elephants was not detrimental to the species and was not for a primarily commercial purpose, and that the officials failed to conduct an appropriate environmental evaluation as required by NEPA. The advocates'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importation of the elephants was denied. The court had to determine what was worse for the elephants, death or transports to the zoos. The court explained that its principal consideration was what would happen to the elephants if the injunction was granted.

This case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court on animal issues and modern challenges of Zoo. We can also learn something from reviewing Born Free USA v. Norton case. First, when we make a judgment of legal issues on animal exhibi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animals. Second, current zoo system needs to change, because it has elements that contradict with animal welfar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role of zoo are Recreation, Education,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Wild Populations. WAZA(the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says that the vision and roles of zoos are Conservation of Wild Populations, Science and Research, Population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Partnerships and Politics, Sustainability, Ethics and Animal Welfare. But zoo's primary function is limited to the supply of recre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zoos should try to conservation of wild populations, be a shelter for animal.

주 제 어 동물 전시, 동물해방론, 동물권론, 동물원, 동물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난민

Key Words Animal Exhibition, Animal Liberation, Animal Right, Zoo, Animal Law, Born Free USA v. Norton, Animal Refugee